

『자활지원센터』의 기본구상과 정책과제

石才恩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임연구원

1. 머리말

자립지원정책은 소득이전을 통한 최저생활보장 정책과 함께 전통적인 빈곤대책의 커다란 두 줄기를 형성해 왔다. 우리나라는 근로능력이 없는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최저생활을 보장하되,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는 직접적인 소득이전 프로그램의 제공을 지양하고 자립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해 왔다. 이와 같은 근로능력 유무에 따른 빈곤대책의 이원적 접근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어지는 일관된 원칙이 되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될 빈곤대책의 기본원칙으로 공표된 바 있다¹⁾.

이러한 빈곤대책의 이원화는 우리나라가 향후 복지기조로 삼은 생산적·예방적 복지의 관점에 부합되는 것이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은 관련 지원을 통하여 다시 정상적인 노동시장으로 복귀시키며, 취약한 근로능력을 가졌지만 근로를

통한 자립에의 시도가 가능한 경우에는 수요를 창출하여 자립을 도모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위한 복지비용 투입은 단순 소모적인 소비가 아니라 생산적 영역에의 복귀를 위한 투자의 개념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자립지원은 생산적·예방적 복지의 실현을 위한 중요한 전략이며, 효과적인 자활지원체계의 구축은 이러한 이념의 구체적 실현인 동시에 자활을 위하여 필수적인 하드웨어로서 자활하부구조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이와같은 차원에서 1996년 5월부터 전국에 5개의 시범 자활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1997년부터 5개의 시범 자활지원센터가 추가 지정되어 모두 10개의 자활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다(표 1 참조)²⁾.

2) 자활지원센터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저소득층의 실태변화와 정책과제』(1995)에서 그 필요성이 처음 제기되었으며, 그후 국민복지기획단에서 저소득층 대책의 하나로 자활지원센터의 설립이 제안되면서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실현방안 검토가 이루어진 결과 시범사업을 실시하게 되었음.

1) 대통령의 '삶의 질 세계화와 복지구상' 발표문, 1995. 3. 23.

표 1. 자활지원센터 현황

	기관명	소재지	중점사업
기 존 시 범 센 터	서울 관악 자활지원센터	서울 신림1동 1631-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푸름환경정소용역 • 일용노동자를 위한 쉼터 • 나눔물산(봉제공장)
	서울 노원 자활지원센터	서울 상계4동 111-3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용역 • 창업지원: 우리 품새, 진성종합 건축공사, 다솜공예사 • 고령자 취업알선
	서울 마포 자활지원센터	서울 성산2동 595 (성산 사회복지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기적응훈련 및 취업알선 • 성산아름회 파출회원 조직 • 공동작업장
	인천 동구 자활지원센터	인천 송림6동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업, 자동차 배선감는 작업, 진공청소기 부속납땜
	대전 동구 자활지원센터	성남 1동 189-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력정보신문 • 마을신문사업
신 규 시 범 센 터	서울 성북 자활지원센터	성북구 정릉동 16-4 (성북 나눔의 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작업장(개량한복봉제) • 용역협동조합(건설일용직, 간병인, 보모 등) • 사랑방 운영
	부산 사상 자활지원센터	부산 사상구 모라3동 520-1 (모라 종합사회복지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작업장(굴유생 부착기 조립) • 장애인작업장(자동차 부품 조립)
	대구 북구 자활지원센터	대구 북구 산격1동 724-12 (산격 종합사회복지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료직업안내 • 자활교육(주부, 고령자 단기적응훈련) • 창업지도(창업상담, 생업자금융자)
	광주 남구 자활지원센터	남구 봉선 2동 132번지 (인애 종합사회복지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자활자립 • 가내부업알선 • 협동조합, 공동체 형성, 가정복지사업
	경기 광명 자활지원센터	광명시 하안3동 200번지 (하안 종합사회복지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보도교육(제과제빵, 한식조리사, 미용) • 직업알선

자료: 보건복지부 생활보호과, 내부자료, 1997.

자활지원센터란 저소득층중 근로능력이 있는 자들이 창업 혹은 취업을 하고자 할 때, 초기에 부딪힐 수 있는 각종 위험부담과 초기비용을 줄임으로써 자영창업 및 취업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확산시켜 저소득층의 자활을 촉진하고 조기에 자립·안정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교육센터(Incubator Center)를 의미한다. 즉, 자활지원센터는 일반인보다 의지, 지식, 자본, 기술, 정보 등 다방면에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저소득층의 부족한 부분을 조사하여 적합한 자활교육 및 훈련을 통해 조정가능한 조건들을 향상시켜 주는 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자활지원센터는 저소득층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장점을 발굴하고, 그 부분에 자원을 집중적으로 제공하여 경쟁력을 가지고 자활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훈련을 제공함으로써 빈곤대책의 자활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에서는 새로운 자활지원체계인 자활지원센터가 어떠한 배경하에서 도입되었으며, 성공적 정착을 위한 구성원칙은 무엇이며, 어떠한 방식으로 운영되는가를 살펴보고 앞으로의 정책과제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2. 기존 자활지원프로그램의 한계

현행 자활지원사업은 지원주체에 따라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정부의 생활보호사업의 일부분으로 실행되고 있는 생업자금융자, 취업알선, 직업훈련, 교육보호 등의 자활보호사업이며, 둘째는 지

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저소득층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생활안정자금 융자(각 자치구마다 명칭은 약간씩 다를 수 있음), 셋째는 지역사회복지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파출부 및 간병인 등의 취업알선, 직업훈련서비스, 공동작업장 사업, 넷째는 저소득층이 주체가 된 자조(self-help)활동의 일환인 생산자협동조합 등을 들 수 있다.

현행 정부주도의 자활지원프로그램의 문제점은 자활보호대상자들 중 다수가 조정이³⁾ 불가능한 상태에 있다는 점과 조정이 가능한 조건들에 대해서도 조정프로그램이 적절치 못하다는 점에 있다. 먼저, 현 자활보호대상자가 자활지원으로 자활가능한 가구로 구성되어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자활보호대상자의 상당수가 거택보호대상에서 탈락한 노인, 장애인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들은 조정될 수 없는 조건인 연령, 폐질 등으로 자활이 거의 불가능한 대상이므로 이들에 대한 자활지원의 효과는 기대하기 힘들다. 실제로 1995년 생활보호대상자 통계에 의하면 자활보호대상 31만 9,503가구중 44.5%인 14만 5,323가구가 가구원중 노동능력이 있는 자가 한명도 없는 가구로 분류되고 있다.

3) 직업훈련, 생업자금융자, 취로사업 프로그램의 대상은 무업자이거나 잠재실업상태에 있는 자임. 이 때 무업자로 만드는 요인은 연령, 성, 건강, 학력, 기술, 자산, 신용, 의지 등이 있을 수 있는데, 이중 연령, 성, 장애 등은 조정이 불가능한 조건인 반면, 기술, 질병, 자산, 신용, 의지 등은 조정이 가능한 조건이라고 할 수 있음. 따라서 자활지원프로그램은 조정이 가능한 조건들에 초점을 두어야 소정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음.

또한 현행 자활지원프로그램이 효과성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유로 각 프로그램이 적용되는 여건과 프로그램이 상호연계되지 못하는 점을 들 수 있다. 관념상으로는 각종 자활보호프로그램에 대한 초과수요가 일어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뚜렷하게 부족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이유는 두 가지 측면에서 해석될 수 있다. 그 하나는 자활프로그램에 의한 급여지급 기준이 엄격하여 제대로 수요가 가시화되지 못하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수요와 공급이 서로 다른 점이다. 따라서 저소득층의 근로의욕과 취업의사를 연결시킬 수 있는 근로동기 유발 프로그램의 개발(수요촉발 프로그램)과 고령자·장애자·여성 등 취약계층을 위한 공급촉진 프로그램이 필요하며, 이들의 취업과 자영창업을 지원할 수 있는 전달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저소득층의 자활을 위한 민간차원의 자구노력으로 전국에 20여 개의 소규모 생산자협동조합이 결성되어 있는데(예, 나레건설, 실과 바늘 등), 이들의 대부분은 자금과 기술부족으로 정착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자금지원, 기술훈련, 경영기술 교육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

이와 같이 현행 정부 및 민간의 자립지원프로그램은 양적으로나, 질적인 측면에서 모두 미흡한 실정이고, 운영방식에 있어서도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적합한 대상에 대한 자활지원의 제공, 자활지원의 양적 확대 및 질적 수

*현행 자활지원프로그램이
효과성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유로
각 프로그램이 적용되는 여건과
프로그램이 상호연계되지 못하는 점을
들 수 있다.*

준의 개선, 그리고 근본적인 전달체계의 조정 등 획기적인 자활지원정책의 개선이 필요하다.

3. 효과적인 자활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기본원칙

자활지원체계가 기존 프로그램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실질적으로 효과적인 자활지원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첫째, 대상의 포괄성 및 대상단위의 다양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새로운 자립지원체계에서 다루는 대상은 현행 생활보호대상자 뿐만 아니라 그 차상위 저소득계층 등 잠재적인 빈곤계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범위의 대상을 포괄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자활지원체계가 빈곤선 이하로 떨어지기 이전에 적절한 자립지원의 제공으로 사전에 빈곤을 예방한다는 적극적인 복지개념에 기반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새로운 자립지원체계에서 자활지원 대상의 단위는 한 개인 뿐만 아니라 몇몇 자활대상자가 모인 집단을 하나의 대상으로 다룰 수도 있다. 즉, 자립지원의

대상 단위를 자활대상자 집단에까지 확대함으로써 각각의 개인에게 제공했을 경우와 동일한 비용으로 집단내의 역동성으로 인한 자활지원의 상승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특히 창업의 경우 여러 개인의 융자금을 합하여 융자금의 규모가 커짐으로써 사업 선택의 폭이 확대되고, 분업이 가능하여 창업에의 전문적인 시도를 가능하게 만드는 여건을 제공함으로써 자활의 성공 가능성이 증대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지역사회는 자활지원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장이 될 수 있는데, 지역사회의 특성을 반영하여 지역별로 자립지원체계나 중점사업 내용 등이 달라질 수 있다. 예컨대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지역의 자립지원체계는 차이가 있어야 할 것이며, 기존 공적 및 민간 복지조직의 존재여부와 활동상황, 그 지역사회 주민의 소득수준이나 개발정도에 따라 자활지원체계의 내용은 달라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자활지원체계의 구축 이전에 지역사회의 자원, 지역사회 주민의 욕구를 잘 파악하고, 이를 통하여 그 지역의 사정에 따라 성공가능한 전략적 사업항목을 개발할 수 있으며 취업수요를 창출해 낼 수 있다. 이와같은 지역사회에 기반한 자활지원체계의 구축은 지방자치단체의 출범으로 지방화시대가 본격화됨에 따라 자연스럽게 정착될 수 있으리라 보여진다.

셋째, 자활대상자 중심의 종합적 지원(case management approach)이 이루어져야

한다. 현행 자활지원정책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일회적, 단편적, 비체계적인 지원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자활대상자의 상황과 욕구를 중심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사례관리 접근이 필요하다. 사례관리의 원리는 서비스의 개별화, 서비스의 포괄성, 클라이언트의 자율성 보장, 보호 및 치료의 지속성으로 요약될 수 있으며, 사례관리기법을 통하여 지역사회내에 거주하는 서비스 대상자에 대해 보다 전향적이고 지속적으로 현존하는 지역사회복지서비스를 통합, 조정하며 그들에게 지속적으로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사회사업가는 한 사람의 자활대상자가 자활과정에 들어가기 위한 장애요인(예, 질병)의 제거로부터 자활상태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때까지의 총자활과정상에 필요한 각종 다양한 일련의 '맞춤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넷째, 공·사의 효율적 연계(정부, 기업, 민간의 역할분담)가 이루어져야 한다. 자립지원체계는 공적 자활프로그램중 생업자금융자, 취로사업, 직업훈련과 긴밀한 연관관계를 가지는 보완적인 프로그램이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기존의 사회복지관 사업 등 지역내에 있는 사회복지 관련 기관간의 유기적인 관계가 강화되어 지역내의 복지사업을 일정한 기준하에 서로 역할을 분담하고 협력하는 체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섯째, 자발적 참여, 민주적·자율적 운

영이어야 한다. 스테판(Stephen M.)은 지금까지 미국에서 실시되어온 빈민에 대한 많은 고용프로그램이 효과적이지 못한 주요 이유로 빈민들 스스로가 이 프로그램의 ‘주인이라는 의식’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따라서 효과적인 탈빈곤 고용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는 빈민들이 이 프로그램을 잘 이해하여 그들의 능력을 극대화하도록 하고, 그 사업이 곧바로 자신들의 성공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인식시켜 사업에 ‘주인의식’을 가지고 임할 수 있도록 강력한 심리적·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자활지원체계는 자활의지의 고취와 자신감을 심어주며 자활의 노하우를 습득시켜 줄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들이 자활지원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동기유발과 성취동기를 불러일으키고, 스스로 주인의식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심리적·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하여 자활지원체계는 대상자의 자활동기를 유발시킬 수 있는 교육 및 정보지원체계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생산·소비·신용을 연결하는 복합적인 협동조합 형태의 자발적 조직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는 체계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4. 자활지원센터 모형

새로운 자활지원체계는 자활지원센터와 자활기금으로 구성된다. 자활지원센터는

효과적인 자활지원이 되기 위해서는 대상의 포괄성 및 대상단위의 다양성이 인정되고,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자활대상자에 대한 종합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자활보호대상자의 관점에서 필요한 프로그램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연계성 있게 제공함으로써 현행 단편적인 자활지원 대책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이 때 자활지원센터의 대상(target population)은 현행 제도 상으로 저소득층으로 분류되고 있는 생활보호대상자에 국한되지 않고 그 차상위 저소득층 및 잠재적 저소득층 등 보다 포괄적인 대상을 포함한다.

한편 저소득층의 자활관련 자금지원을 안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기존의 생업자금융자의 대상 및 융자규모를 대폭 확대할 수 있기 위하여 자활기금을 조성하도록 한다. 자활기금은 국고, 지방비, 민간복지재단 출연, 공동모금법에 의한 기금, 재정투·융자특별회계로부터의 융자금, 비실명전환환수금 등으로 조성한다.

자활지원센터의 기능은 크게 정보제공 기능, 기술 및 경영지도 등 교육기능, 자금융자 및 알선 기능, 협동사업팀 보육기능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정보제공의 역할로서는 창업직종 소개, 사전정보 제공 등이 있다. 해당 지역에서 유망한 창업가능 직종을 발굴 소개하고, 창업시에

필요한 각종 사전정보를 제공하며, 창업 후의 원활하고 안정적인 경영을 위하여 상담을 제공한다. 정보제공의 분야는 지역사회 욕구 및 시장조사, 지역별 특성 및 욕구를 감안하여 적합한 업종 개발, 업종에 대한 필요자본규모, 운영상의 필요기술, 경영기법 등의 관련정보, 지역내 취업정보 지원 등이 있을 수 있다.

둘째, 기술 및 경영지도교육 등 창업시 경영에 필요한 경영기법을 교육한다. 자활교육에는 직업훈련 알선 및 훈련, 경영교육, 적성검사, 지역내 상호공동체 교육 등이 있을 수 있다.

셋째, 지역사업내 각종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체의 보육기능을 수행한다. 여기서 지역사회내 필요한 사업으로 지역사회내 준공적 업무의 대행, 지역사회와 타지역의 직접생산자를 연결하는 소비협동조합의 운영, 영구아파트단지내 시장개설, 가입자간 부분적인 연대에 의한 자영업체 구성 등이 있을 수 있다. 여기서 사업체란 저소득층이 자영창업을 하고자 할 때 가장 큰 애로사항인 사업자금 조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비슷한 뜻을 가진 사람끼리 모여서 만든 동업형태라 할 수 있다. 이때 협업체의 참여자는 적은 자금들을 모아 사업자금으로 조성할 뿐만 아니라 근로를 동시에 제공하는 형태를 가르킨다. 이것은 소규모의 협동조합과 유사한 형태가 될 것이다. 또한 보육기능이란 자활대상자들의 자영창업 및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을 갖추고 경영 및 기

술에 대한 상담 및 정보의 제공, 자금의 융자 및 알선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자활을 촉진하고 조기에 자립안정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한편 자활지원센터에 의해 설립된 협업체에 대한 지원으로는 사업에 필요한 정보제공, 사업수행시 필요한 교육의 제공 혹은 알선, 구청 등에서 실시하는 각종 사업에 참여시 필요한 보증, 자금융자시 개인보다 유리한 융자액과 융자조건 부여, 자영업체의 설립전까지 사무실과 사무 기기를 제공하고 최소한 관리운영비를 제외한 사무실 사용료의 면제 등이 있을 수 있다.

넷째, 자금지원 및 융자알선, 신용협동조합 운영 창업자금 지원의 역할로서는 각 창업자의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자금 융자규모를 설정하는 것이다. 자금은 사업의 유지와 확대를 위해 장기저리융자의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그 규모는 창업의 종류와 규모, 그리고 개인의 자금소유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융자사업에는 복지관련 자금지원 대행 업무, 은행 및 제2금융권으로부터의 융자 알선, 가입자를 중심으로 하는 신용협동조합체의 구성 등이 있을 수 있다.

한편 자활지원센터의 운영은 민간이 맡되, 정부의 재정지원이 필요하며, 기존 자활지원사업의 연계 등 상호 긴밀한 협조관계가 요구된다. 또한 자활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한 인력은 지역내 사회복지사

(지역활동가)가 주축이 되고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적극적인 협조와 인근 학교의 교수 및 학생의 자원봉사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자활지원센터의 추진을 위한 비용은 시설비용, 관리운영비, 사업비로 분류될 수 있을 것이다. 센터시설비는 기존의 사회복지관 조직 등을 활용하며, 센터운영비는 장기적으로는 센터에 참여하는 대상자들의 자조적 활동에 의하여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나 일정수의 조합원이 모일 때까지의 초창기에는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복지재단의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센터는 고령자·장애인·여성 등 취약계층을 위한 소득창출프로그램이 포함될 것이므로 고령자고용촉진, 장애인고용촉진 등 각종 취약계층의 고용을 위한 공적인 사업자금을 지원받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융자자금은 기본적 공적인 관련 자금을 대행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면서 조성하고, 장기적으로는 센터별로 신용협동조합을 구성하여 자금을 모아 투자·대출할 수 있는 자립체계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자활지원센터의 위상은 민간차원의 자활지원체제로 정립하되 공적부문과 보충적 관계(complementary relationship)를 유지하도록 한다. 이를 위하여 공적부문과의 상호간 서비스 의뢰체계를 구축하여 공적부문과의 정보망 공유로 중복적 지원 배제를 체계화하고, 공적부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와의 연장선상에서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

자활지원센터의 기능은 정보제공 기능, 기술 및 경영지도 등 교육기능, 자금융자 및 알선 기능, 협동사업팀 보육기능으로 나눌 수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기존의 자활프로그램중 취로사업비를 개선하여 취로사업을 각종 지역사업으로 세분화하고 이를 입찰방식으로 지역내 자활지원센터에서 조직된 협업체에게 배분함으로써 사업참여자의 의욕을 증진하고 사업의 효과성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취로사업외에도 각종 지방정부의 사업중 단순노동으로 가능한 사업에 대하여는 취로사업 개선방식과 마찬가지로 발주가 가능할 것이다. 또한 노동부가 실시하는 각종 사업과의 연계가 필요하며, 특히 장애인고용촉진사업과 고령자고용촉진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통한 연계확보가 필요할 것이다.

5. 맺음말: 향후 정책과제

저소득층에 대한 자활지원은 동서고금은 물론 이념적 입장에 관계없이 매력적인 탈빈곤 정책으로 인정되고 있다. 이는 자립지원프로그램이 직접적인 소득이전프로그램에 비하여 보호대상자의 자생력을 키워줌으로써 탈빈곤 효과가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 근본적인 탈빈곤 정책으로서의 잠재성이 크기 때문이

다. 특히 생산적 복지의 강조와 더불어 자활지원의 중요성은 한층 부각되고 있다. 생산적 복지 흐름에 찬동을 하던 혹은 하지 않던 간에 효과적인 자활지원을 위한 새로운 접근이 모색된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 할 수 있으며, 중요한 것은 실제로 효과적일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와같은 맥락에서 자활지원센터는 기존의 자활지원접근이 대상자의 욕구나 상황에 관계없이 일률적이고 단편적·단발적으로 이루어져 효과적인 자활지원이 되지 못한 시행착오를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다.

그러나 자활지원센터안은 아직 현실적으로 완전히 실험되지 못한 상태이므로 자활지원센터가 기존의 접근과 뚜렷하게 다른 성공적 자활지원이 될 수 있기 위해서는 현실상황에 부딪치는 구체적 사안들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연구·검토가 필요하다. 아무리 좋은 뜻을 지닌 훌륭한 안이라도 실행과정에서 그 뜻이 살려지지 못한다면, 그 안이 실패하는 것은 물론 자활지원 자체에 대한 회의까지 몰고 올 수 있다. 따라서 지속적인 실천과정속에서 검증을 통하여 자활지원센터의 구상이 올바르게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정책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활지원센터가 대상으로 하는 계층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현재 자활지원센터가 주로 추진하는 사업을 검토하여 보면 노동생산성 측면에서 타분야에서 종사하여도 취업가능한 계층을 대

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자활지원센터의 중점 추진업무가 생산자협동조합 성격의 근로자지주제 형태를 지향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지역사회 내에 자활지원대상자는 노동시장에서 경쟁력이 다소 떨어지는 계층을 주요대상자로 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자활지원센터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인력의 양성이 필요하다. 자활지원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자활지원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이 지역의 빈곤퇴치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면서 동시에 지원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진 인력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인력의 뒷받침 없는 자활지원센터의 확대는 또 하나의 경직된 복지사업을 재생산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따라서 자활지원센터의 양적 확대보다는 질적 내실화를 통하여 경험있는 자활지원인력을 자체내에서 재생산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와 체계가 필요하다.

셋째, 자활지원센터의 중심업무는 자활대상자들이 자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매개하는 역할이어야 한다. 자활지원센터가 중심이 되는 사업의 추진 및 전개는 제한된 자활지원센터 인력 및 자원을 충분히 효과적으로 활용하는데 장애요소가 된다. 더욱이 자활지원센터가 중심이 되는 사업의 전개는 제한된 대상자에게만 지원이 편중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넷째,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는 취로사업의 발전적 해체를 통하여

취로사업 투입 예산을 자활지원센터의 용역대행사업과 효과적으로 연계할 필요가 있다. 현재 취로사업은 원래의 근로동기 유인이라는 목적과 달리 거의 노동능력이 없는 대상자들에 대한 구호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취로사업 예산을 저소득층 생계비지원과 노동능력이 있는 사람에 대한 자활사업으로 이분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다섯째, 자활지원센터는 생활협동적인 사업에 보다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기본적으로 자활지원센터가 주대상으로 하는 지역은 저소득층이 밀집한 지역이므로 자활대상자들간에 생활연대를 통하여 자활대상자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자활대상자들간의 자원배분을 통하여 상호의존·유지하는 체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생활협동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자활지원센터는 지방자치단체와의 연계가 강화되어야 한다. 자활지원센터는 각 지역별 빈곤의 특성에 맞추어 다양하게 추진되어야 하며 이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협조체계의 구축과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된다. 이를 위하여 지자체와의 협의기구

자활지원센터의 구상이 올바르게 실현될 수 있기 위해서는 자활지원센터가 대상으로 하는 계층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자활지원센터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인력의 양성이 필요하다.

혹은 협조채널이 만들어져야 한다.

일곱째, 현재 추진되고 있는 생활보호법의 개정내용에서 자활지원기금의 원활한 조달을 위한 자활지원재단의 설립이 검토되고 있다. 자활지원재단은 자활지원사업의 효과적인 추진과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필요되어지는 측면이 있으나, 자활지원재단이 또 하나의 옥상옥 조직이 되지 않도록 세심한 고려가 필요하다.

여덟째, 자활지원센터는 종국적으로 완전자율단체로 성숙되어야 한다. 현재는 중앙정부의 강력한 지원하에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그러한 지원없이도 자생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자활지원센터가 스스로 생존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가져야 한다. 경쟁력을 가진다는 것은 자활지원센터의 각종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